

기업 휴지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오 해 송

〈보험개발원 가계보험부 부장〉

1. 개요

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재물이 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사고(Peril)로 인하여 가치의 감소 또는 상실된 **발생하는 경우 손실의 재물의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재산의 직접적인 손해 뿐만이 아니라 기업인 경우는 휴업하거나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이익의 감소 또는 고정비의 계속적인 지출 등 간접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발생하는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휴지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휴지보험이 탄생된 것은 1970. 9. 24 일로 영문화재보험약관(FOC Foreign Policy Form)에 첨부할 특약으로 미국식 기업휴지보험약관(Gross Earning Form No. 4)이 인가되었으며 1983. 2. 4에는 영국식 이익보험약관(Loss of Profit Clause)과 미국식 기업휴지보험약관인 Gross Earning Form No.3(상업 및 비제조업체용)가 인가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성 물건의 보험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약관들은 모두 영문약관이기 때문에 국문약관을 사용하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업휴

지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의 길이 막혀 있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7. 11. 2 국문기업휴지보험약관을 제정, 인가를 받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동약관은 제조업체용과 비제조업체용으로 이원화하고 내용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Gross Earning Form을 수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영국의 Loss of Profit 방식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보상내용

기업이 휴업하거나 영업을 축소 한 기간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수익이 감소되지만 종업원의 급료, 임대료 등 기업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보험에 부보된 재물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기업이 휴지 또는 부분적으로 조업중단 상태가 발생할 때 그 결과로 생기는 수익의 감소분 및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종업원의 급료, 임대료 등의 간접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여기서 “수익의 감소”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나라에 따라 다르

며 Underwriting과정에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지면제한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보상메카니즘의 이론적인 틀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기업의 영업총수익(총매출액 또는 생산액)은 변동비(원자재비용 등의 가변비용), 경상비(임금 등 고정비용) 그리고 영업순이익으로 구성된다.

변동비와 영업순이익은 영업총수익의 증감에 따라 일정비율로 증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편, 경상비는 영업수익의 증감과 무관하게 항상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여 총수익이 감소한 경우 변동비는 영업수익의 감소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변동비에 관한 기업의 손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상비는 사고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므로 총수익의 감소에 따라 영업순이익은 당연히 감소한다.

이러한 논리로 총수익이 일정한도 이상 격감하게 되면 경상비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은 결국 순이익의 감소분과 격감된 영업수익으로 인하여 미충당되는 경상비의 총계를 보상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휴지보험약관

앞에서 국문 및 영문기업휴지담보약관의 생성과정을 간단히 소개

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국문휴지 보험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국문약관이 미국방식인 Gross Earning Form 과 영국방식인 Loss of Profit Clause의 내용을 혼합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휴지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 총수익

우리나라의 국문 휴지보험약관은 미국의 Gross Earning약관과 마찬가지로 총수익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총수익에 대한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산출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은 물론 손해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액 및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기초가 곧 총수익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익의 정의와 회계이론에 기초한 총수익의 산출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Gross Earning 방식의 운용은 정형화된 Work Sheet 를 사용하여 총수익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Underwriting 이나 보험금산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업계공통의 산출명세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익산출방법을 열거하여 보기로 한다.

$$\text{총수익} = (\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④} + \text{⑤} + \text{⑥})$$

- ① 생산하여 판매한 물품의 정미 판매액
- ②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정미판매액
- ③ 기업활동으로 생기는 기타수익
- ④ 생산에 직접 투여한 원자재, 부자재 및 용역구입비
- ⑤ 구입하여 판매한 상품의 구입비 (포장자재비포함)
- ⑥ 전매를 위하여 임시로 구입한 용역비

상기의 약관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익은 모든 제조활동 또는 영업활동으로 부터 발생된 연간 총 순매출액, 판매 및 비제조활동에 의해 발생한 연간 총 순매출액과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타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투여된 원재료비 등 제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수익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연간 총매출액, 연간 총순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액은 미국의 Gross Earning방식의 경우 이제 직후부터 12개월간의 예상매출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손해사정의 관행으로 보상기간 만료시 12개월간의 예상매출액을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문약관은 손해발생일로부터 1년동안의 총수익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산출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액 산출의 필요를 느낄 때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손해발생시에 생긴다. 보험가액 산출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것은 기업결산이 최저 1년단위로 행하고 있으며 또한 1년을 기준함으로써 기업의 계절적인 실적변동요인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을 예상하여 결정함으로써 충분한 보상(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다. 손해사정

기업휴지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해당 재산보험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휴지가 발생하는 기본요소인 건물, 기계, 동산 등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어야만 휴지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다. 총수익방식에서는 12개월간의 예상총수익에서 휴지기간동안에 발생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관의 내용을 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직후부터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은 피보험자의 실제손해를 보상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총수익을 한도로 하며 휴지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없는 제 비용은 공제하지만 휴지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지급되는 정상경비(임금포함)는 손해액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이 산출되면 보통약관에서 정한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의거,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게 된다.

라. 보상기간

보험가입자는 최악의 사고발생, 즉 전손발생시를 가정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 보상기간을 정한다. 보상기간설정은 영국방식(Loss of Profit)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약관에서도 보상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미국방식(Gross Earning Form)은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를 사용하여 보상기간을 조정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보상기간은 피해재산과 기업수입의 양자를 원상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보상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둔 경우에 언제나 연간예상 총수익의 100%금액이 되지만 보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장기화되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가입금액도 증액된다.

4. 요율산출방법

기업휴지담보특약의 요율산출은 기초요율, 약정보상기간계수 및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계약의 경우

는 면책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적용요율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보험료계산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text{보험료} = A \times Br \times Pf \times Xf$$

A : 보험가입금액

Br : 기초요율

Pf : 약정보상기간계수

Xf : 면책계수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 \times Pf \times Xf$ 가 적용요율이 된다. 여기서 기초요율(Br)은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에 적용될 화재보험요율을 말하며, 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1개동인 경우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위험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화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바닥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요율을 산출한다.

기초요율산출방법

$$\text{기초요율} = \frac{F \times A_1 + F \times A_2 + \dots}{A_1 + A_2 + \dots}$$

F : 화재요율

A₁ : 바닥면적 ①

A₂ : 바닥면적 ②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 요율산출이 적합하지 않은 물건, 즉 석유공업물건 등에 대하여는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전체의 평균요율을 기초요율로 사용하도록

〈약정보상기간 계수표〉

약정보상 기간	1개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수	0.42	0.54	0.61	0.64	0.66	0.67	0.68	0.70	0.71	0.72	0.74	0.75

하고 있다.

약정보상기간계수 및 면책기간 계수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수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적통계가 어느 정도 집적되면 분석과 검증을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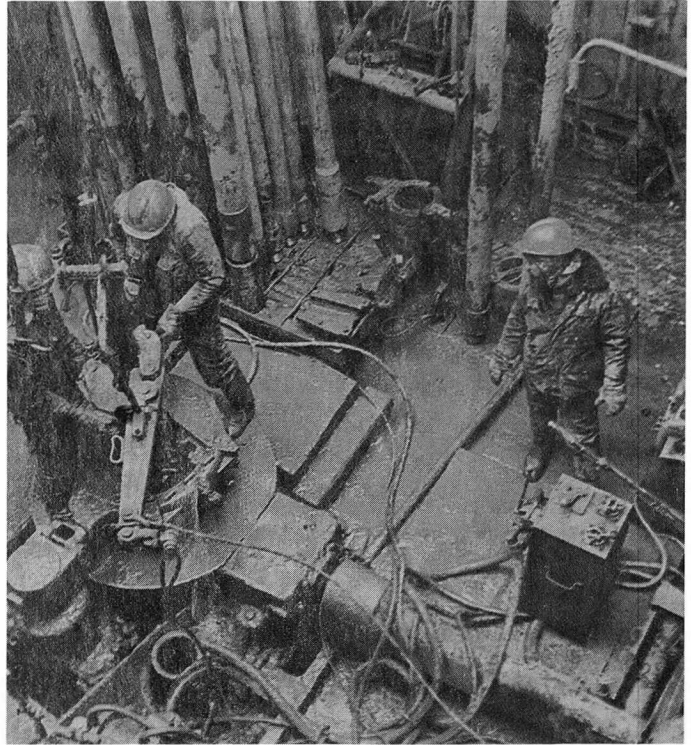
〈면책기간 계수표〉

면책기간	계 수
7일	0.950
10일	0.925
14일	0.900
21일	0.875
30일	0.800

5. 맺는 말

현대기업의 생산 또는 용역설비는 고가품인데다가 원거리의 해외로 부터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복구기간이 길어져 재물손실(화재의 직접손실) 자체보다도 오히려 휴지에 의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복구지연 사태는 복구기간중의 손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말미암아 Market Share의 상실로써 자칫 기업도산에 까지 이를수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은 어느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못지 않게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휴지보험의 시장확대가 전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기업휴지보험의 계약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피보험자 측면에서는 재물 자



체의 직접적인 물적손해에 대한 부모의 당위성은 넓게 인식되어 있으나 휴지에 따른 간접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부모의 필요성은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험자 측면에서 볼 때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마케팅활동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언더라이터의 부족으로 계약인수, 관리 및 손해사정 등의 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의 운용은 인가된 약관과 요율산출규정 외에 여타의 관리규정도 제정되어 있지않고 전통적인 관행도 일반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손해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 상품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인수 및 손해사정에 관한 실무차원의 이론을 정형화하여 보험자나 피보험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운영제도로 유도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